

● 제32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297, 2298

I. 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 11. 1.

다. 회부일 : 2024. 11. 3.

2.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최종예산 대비 3.7% 감액된 1조 5,459억 6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안)	2024대비 증감	증감율 (%)
합계	1,605,786	1,545,960	△59,826	△3.7%
소계(일반회계)	1,580,567	1,519,366	△61,201	△3.9%
200 세외수입	102,224	105,138	2,914	2.9%
210 경상적세외수입	917	1,183	266	29.0%
220 임시적세외수입	92,038	92,063	28	0.0%
500 보조금	1,221,134	1,162,168	△58,966	△4.8%
510 국고보조금등	1,221,134	1,162,168	△58,966	△4.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210	252,060	△5,150	△2.0%
710 보전수입등	6,073	6,409	336	5.5%
720 내부거래	251,137	245,651	△5,486	△2.2%

예산과목 (장/관)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안)	2024대비 증감	증감율 (%)
소계(균형발전특별회계)	25,218	26,594	1,376	5.5%
500 보조금	24,885	25,942	1,057	4.2%
510 국고보조금등	24,885	25,942	1,057	4.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3	652	319	95.8%
710 보전수입등	333	652	319	95.8%

나. 세출예산

-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최종 예산대비 2.6% 감액된 3조 2,271억 2천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안)	2024년대비 증감	증감율 (%)
합계	3,314,023	3,227,126	△86,897	△2.6%
소계(일반회계)	3,234,805	3,145,326	△89,479	△2.8%
사업비	3,225,330	3,139,357	△85,973	△2.7%
행정운영경비	1,007	813	△194	△19.3%
재무활동비	8,467	5,157	△3,310	△39.1%
소계(균형발전특별회계)	79,218	81,800	2,582	3.3%
사업비	78,833	81,363	2,530	3.2%
재무활동비	385	437	52	13.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II.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4. 11. 1.
- 다. 회부일 : 2024. 11. 3.

2.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 및 특징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평등 기금의 2025년도말 총 조성액(안)은 241억 5천 8백만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1억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2025년도 기금조성계획 >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e = a + d
	수입(b)	지출(c)	증감 d = b - c	
24,176,770	1,111,254	1,130,000	△18,746	24,158,024

* 수입액은 전입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V.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세입 예산안 검토

가. 202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개요

- 2025년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예산은 1조 5,459억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예산안 총 48조 407억원의 3.21%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2024년 예산 대비 598억원이 감액(△3.7%)된 것임.

< 2025년도 세입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2024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25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1,605,786	1,545,960	△59,826	△3.7%

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특징

- 2025년도 여성가족실 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등’은 1조 1,881억원(균형발전특별회계 259억원 포함)으로 전체 세입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2,456억원으로 전체의 15.9%로 나타남.

<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여성가족실)	1,433,296 (100.0)	1,463,101 (100.0)	1,518,052 (100.0)	1,605,786 (100.0)	1,545,960 (100.0)	-59,826	-3.7%
계(일반회계)	1,421,979 (99.2)	1,452,362 (99.3)	1,510,586 (99.5)	1,580,567 (98.4)	1,519,366 (98.3)	-61,201	-3.9%
세외수입 (전체대비구성비율)	73,590 (5.1)	63,868 (4.4)	74,306 (4.9)	102,224 (6.4)	105,138 (6.8)	2,914	2.9%
경상적세외수입 (전체대비구성비율)	564 (0.0)	485 (0.0)	628 (0.0)	917 (0.1)	1,183 (0.1)	266	29.0%
공유재산임대료	12	13	14	14	14	0	0.0%
기타사업수입	39	37	43	38	521	483	1271.1%
기타이자수입	513	435	571	865	648	-217	-25.1%
임시적세외수입 (전체대비구성비율)	73,026 (5.1)	63,383 (4.3)	73,678 (4.9)	92,035 (5.7)	92,063 (6.0)	28	0.0%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63,417	56,949	60,280	80,606	85,059	4453	5.5%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162	3,427	7,591	3,114	-4477	-59.0%
위탁비반환수입		-	2,815	3,723	3,755	32	0.9%
그외수입	3,539	772	1,090	114	135	21	18.4%
지난연도수입	6,070	3,499	6,066	9,273	11,893	2620	28.3%
지방교부세 (전체대비구성비율)	240 (0.0)	30 (0.0)	-	-	-	-	-
지방교부	240	30	-	-	-	-	-
특별교부세	240	30	-	-	-	-	-
보조금 (전체대비구성비율)	1,008,300 (70.3)	1,064,353 (72.7)	1,158,029 (76.3)	1,221,134 (76.1)	1,162,168 (75.2)	-58,966	-4.8%
국고보조금등	1,008,300	1,064,353	1,158,029	1,221,134	1,162,168	-58,966	-4.8%
국고보조금 (전체대비구성비율)	953,653 (66.5)	1,003,981 (68.6)	1,052,760 (69.3)	1,139,449 (71.0)	1,077,035 (69.7)	-62,414	-5.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912	3,928	44,245	25,828	24,550	-1,278	-4.9%
기금	52,735	56,444	61,024	55,857	60,582	4,725	8.5%
지방채 (전체대비구성비율)	-	-	-	-	-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				
국내차입금	-	-	-	-	-	-	-
모집공채	-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체대비구성비율)	339,849 (23.7)	324,111 (22.2)	278,251 (18.3)	257,210 (16.0)	252,060 (16.3)	-5,150	-2.0%
보전수입등	3,965	2,986	5,994	6,073	6,409	336	5.5%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65	2,986	5,994	6,065	5,219	-846	-13.9%
국고보조금 등반환금	-	-	-	8	1,190	1,182	14775.0%
내부거래	335,884 (23.4)	321,125 (21.9)	272,257 (17.9)	251,137 (15.6)	245,651 (15.9)	-5,486	-2.2%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	335,884	321,125	272,257	251,137	245,651	-5,486	-2.2%
계(균형발전특별회계)	11,317 (0.8)	9,409 (0.6)	7,467 (0.5)	25,218 (1.6)	26,594 (1.7)	1,376	5.5%
보조금 (전체대비구성비율)	11,317 (0.8)	9,409 (0.6)	7,082 (0.0)	24,885 (1.5)	25,942 (1.7)	1,057	4.2%
국고보조금등	11,317	9,409	7,082	24,885	25,942	1,057	4.2%
국고보조금	11,317	9,409	5,949	-	-	-	-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 보조금		-	1,133	24,885	25,942	1,057	4.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체대비구성비율)	-	1,330 (0.1)	385 (0.0)	333 (0.0)	652 (0.0)	319	95.8%
보전수입등	-	1,330	385	333	652	319	95.8%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	385	333	652	319	95.8%

-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의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202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다가 2025년에는 전년대비 5.5%가량 감소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생 현상에 따른 아동수 감소로 2021년에는 아동수당 및 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감소하여 9,536 억원이었으나 첫만남 이용권 지원('22.1.1.이후 출생아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및 영아수당 지원(만 0~1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신설,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등 저출생 대응 차원의 아동 관련 정책이 강화되면서 2022년 국고보조금 등 규모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2024년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등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 국고보조금이 866억원 증액 되었음.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전년도 부과 세입 중 체납분이 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증가하였음. 특별회계와 기금의 세입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은 전년대비 8.5% 증액,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5.8%임.

<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 주요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계 (여성가족실)	1,433,296 (100.0)	1,463,101 (100.0)	1,518,052 (100.0)	1,605,786 (100.0)	1,545,960 (100.0)	-59,826	-3.7%
국고보조금등 + 교육비특별회 계전입금	1,355,501 (94.6)	1,394,887 (95.3)	1,437,368 (94.7)	1,497,156 (93.2)	1,433,761 (92.7)	-63,395	-4.2%
국고보조금 등	1,019,617 (71.1)	1,073,762 (73.4)	1,165,111 (76.8)	1,246,019 (77.6)	1,188,110 (76.9)	-57,909	-4.6%
일반회계	1,008,300	1,064,353	1,158,029	1,221,134	1,162,168	-58,966	-4.8%
균형발전 특별회계	11,317	9,409	7,082	24,885	25,942	1,057	4.2%
교육비특별 회계 전입금 (내부거래)	335,884 (23.4)	321,125 (21.9)	272,257 (17.9)	251,137 (15.6)	245,651 (15.9)	-5,486	-2.2%

- 한편,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민간 교부 보조금 반환수입이 44억 (△59%) 감액 되었고 지방보조금 미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이 2 억원(△25.1%) 감액됨.
- 한편,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전년대비 4.2%(1,057백만 원) 증가한 259억 4,200만원임. 주요 세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보조금'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지 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임.

가.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3조 2,271억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3조 3,314억원 대비 2.6% 감액된 수준임.

< 2025년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2024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25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x 1,246,690)	(x 1,188,110)	-(x 58,580)	-2.6%
3,314,023	3,227,126	-86,897	

나. 최근 5년간 세출예산 변동추이

- 여성가족실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45조 7,230억원)의 6.7%에 해당하며, 서울시 총 예산대비율은 2024년 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으나 2025년은 전년대비 2.6% 감소되었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예산 및 여성가족실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서울시 총예산	여성가족실 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대비 비율	전년대비증감율
2021	46,697,522	2,857,993	6.1	△11.1
2022	52,223,325	2,978,584	5.7	4.2
2023	50,375,982	3,183,284	6.3	6.9
2024	45,740,518	3,314,023	7.2	4.1
2025	48,040,683	3,227,126	6.7	-2.6

*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

* 서울시 총예산은 각 연도별 예산서(안)에 나온 전년도 최종예산 자료를 사용함

- 최근 5년간 여성가족실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2조 8,579억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3조 2,271억원으로 증가하여, 4년 사이에 12.9%(3,691억원) 증가함.
- 이는 동 기간 동안 서울시 총예산 규모가 21.2%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저출생 현상에 따른 아동수 감소로 인한 보육과 아동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육정책 등의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은 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서울시 주요 시정 사업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과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여성가족실 예산규모가 서울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6.1%였던 것이 2022년에 5.7%로 줄어들었다가 2023년부터 증가하여 2024년 예산안 비중이 7.2%까지 늘어났는데, 평균적으로 5.2%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의 구조 및 주요 특징

○ 여성가족실 세출구조는 연례적으로 99%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됨.

<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예산안		
					예산액	2024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2,870,435 (100.0)	2,978,584 (100.0)	3,183,284 (100.0)	3,314,023 (100.0)	3,227,126 (100.0)	-86,897	-2.6
소계 (일반회계)	2,805,407 (97.7)	2,938,820 (98.7)	3,151,087 (99.0)	3,234,805 (97.6)	3,145,326 (97.5)	-89,479	-2.8
사업비	2,801,199 (97.6)	2,928,899 (98.3)	3,141,458 (98.7)	3,225,330 (97.3)	3,139,357 (97.3)	-85,973	-2.7
행정운영경비	787 (0.0)	894 (0.0)	1,045 (0.0)	1,007 (0.0)	813 (0.0)	-194	-19.3
재무활동	3,421 (0.1)	9,027 (0.3)	8,584 (0.3)	8,467 (0.3)	5,157 (0.2)	-3,310	-39.1
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65,028 (2.3)	39,764 (1.3)	32,196 (1.0)	79,218 (2.4)	81,800 (2.5)	2,582	3.3
사업비	65,028 (2.3)	39,668 (1.3)	30,866 (1.0)	78,833 (2.4)	81,363 (2.5)	2,530	3.2
재무활동	0 (0.0)	96 (0.0)	1,330 (0.0)	385 (0.0)	437 (0.0)	52	13.5

- 세출예산 중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818억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5년간 여성가족실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에 무상보육을 도입 이후 매해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났으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2.6%가 감소하였음.
- 이는 저출생이라는 상황에서 아동 수 감소 예측에 따른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의 국고보조금 감소 및 세입 예산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

- 2025년 여성가족실 전략목표는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이며 기본방향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 ▶양성 평등하고 안전한 서울 ▶아이돌봄 걱정없는 서울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서울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로 5가지임.
- 이에 정책사업목표는 8가지 분야이며 세부 단위사업은 21개이며 정책사업 추진 예산액은 3조 2,207억임(예산액 대비 99.9%)

< 2025년도 여성가족실 정책목표별 예산규모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액	총예산액
1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2)	저출생극복 환경조성	21,029	139,862
		출산 및 양육지원	118,833	
2	일상생활의 전영역에서 차별없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3)	성평등 문화 확산	293	76,585
		성평등 인권보호	36,41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39,879	
3	사회안전약자 안심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불안감 해소(1)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13,035	13,035

구분		단위사업	예산액	총예산액
4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4)	맞춤형 보육 확대	6,381	2,012,193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984,798	
		보육시설 확충(일반)	17,191	
		보육시설 확충(특별)	3,824	
5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2)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58,179	101,633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43,454	
6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일반)	613,190	663,030
		아동복지서비스 증진(특별)	34,08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15,755	
7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5)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20,746	213,537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11,180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83,270	
		한부모 가족 지원	98,341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특별)	0	
8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1)	아동복지센터운영	844	844

마.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여성가족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담당관 소관 예산이 여성가족실 전체 예산의 62.4%(2조12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아동담당관 20.7%(6,680억원), 가족담당관이 6.6%(2,136억원), 저출생담당관 4.3%(1,401억원), 아이돌봄담당관 3.2%(1,021억원), 양성평등담당관 2.8%(897억원), 아동복지센터 0.03%(10억원) 순임.

< 여성가족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서별	2023년 (결산기준)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
총계	3,183,284	3,314,023	3,227,126	-86,897	-2.6%
	100%	100%	100%		
저출생담당관	-	140,393	140,147	-246	-0.2%
	-	4.2%	4.3%		
양성평등담당관	213,883	89,071	89,794	723	0.8%
	6.7%	2.7%	2.8%		
영유아담당관	1,938,479	2,122,068	2,012,257	-109,811	-5.2%
	60.9%	64.0%	62.4%		
아이돌봄담당관	181,313	91,614	102,132	10,518	11.5%
	5.7%	2.8%	3.2%		
아동담당관	677,078	659,870	668,051	8,181	1.2%
	21.3%	19.9%	20.7%		
가족담당관	156,139	209,563	213,680	4,117	2.0%
	4.9%	6.3%	6.6%		
아동복지센터	1,157	1,444	1,064	-380	-26.3%
	0.0%	0.0%	0.03%		

*2023년 1인가구담당관 예산 15,235백만원 별도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은 영유아담당관과 아동담당관, 가족담당관이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 보육·아동(돌봄)·가족사업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실의 사업과 예산이 구성됨을 보여줌.
 - 여성가족실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생담당관’을 주무과로 하여 ‘양육친화기업팀’ 과 ‘늘봄학교지원팀’을 신설함.
- 부서별 예산규모를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영유아담당관이 1,098억원(△5.2%)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아동복지센터가 3억원(△26.3%) 감소함.
 - 반면, 키즈카페 확대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에 따라 아이돌봄담

당관이 105억원(11.5%)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가족담당관 41억원(2.0%)이 소폭 증가함.

- 부서별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저출생담당관 ‘출산·육아 관련 신규사업 107억원’, ▶양성평등 담당관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사업 44억원’,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98억원(보조교사지원 45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34억, 대체교사지원 19억)’, ▶아이돌봄담당 ‘키즈카페 117개소 운영·신규확대 78억원’, ▶아동담당관 ‘차상위 계층 아동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39억원’, ▶가족담당관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및 가족이야기관 설립 19억원’ 편성함.
- 부서별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저출생담당관 ‘임산부 교통비 지원 △78억원 ▶양성평등담당관 ‘안심귀가스카우트 △22억원 ▶영유아 담당관 ‘부모급여 지원 △1,569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31억원 ▶아동담당관 ‘아동수당 지원’ △292억원 등임.

<부서별 사업수 및 주요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2025년 예산액	2025년 정책 사업수					주요 증감사업 현황 (5억 이상 증감액 기준)
		총계	2024년 대비			'24년 사업수	
			증	감	동일		
전체	3,227,126	197	96	86	15	207	
저출생 담당관	140,147	16	6	10	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증 19억),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증52억),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증19억),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증17억) ○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감19억), 임산부 교통비 지원(감78억)

구분	2025년 예산액	2025년 정책 사업수					주요 증감사업 현황 (5억 이상 증감액 기준)
		총계	2024년 대비				
			증	감	동일	'24년 사업수	
여성평등 담당관	89,794	41	19	18	4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물품 지원(증44억), 여성노숙인시설 기능보강(26억) ○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능력개발원(감8억), 여성발전센터 운영(감18억),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감12억), 안심귀가스카우트(감22억)
영유아 담당관	2,012,257	31	12	18	1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료 지원(증 642억),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증45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증34억),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증19억)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지원(감1,569억), 가정양육수당 지원(감131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감37억),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감27억),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감20억)
아이돌봄 담당관	102,132	16	10	6	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증78억),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증26억),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증9억)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감7억)
아동 담당관	668,051	46	29	13	4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설치 운영(18억),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19억),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15억),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7억),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239억) ○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지원(감292억),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감8억),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감10억) 등

구분	2025년 예산액	2025년 정책 사업수					주요 증감사업 현황 (5억 이상 증감액 기준)
		총계	2024년 대비				
			증	감	동일	'24년 사업수	
가족 담당관	213,680	42	19	20	3	43	○ 증액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증13억) - 서울가족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증6억) ○ 감액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감5억)
아동복지 센터	1,064	5	1	1	3	6	○ 해당없음

바.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

- 2025년도 기준 여성가족실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 간의 예산 비율은 75 : 25로 나타남.
- 즉, 여성가족실 사업 예산의 3/4 이상이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법정 의무 준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소폭 감액되어 나머지 순수 서울시에서 가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25.0% 수준으로 2024년(24.2%)보다 시비사업 비중이 0.8% 가량 소폭 증액됨.
 - 국비보조금 사업과 순수시비 사업을 사업수로 구분해보면, 2025년 기준 총 197개 가운데 국비 매칭사업은 총 91개이고, 순수 시비사업은 106개이며 전년대비 전체 사업수는 4.8% 감소함.
- 아울러 2025년 국비보조금 사업이 944억원 감액된 것과 달리, 순수 시비 사업은 75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족실의 자체 예산사업은 소폭 증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사업 및 순수 시비 사업의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업					
부서	예산			사업수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증감액	2024년	2025년
저출생담당관	66,343	64,621	-1,722	2	2
양성평등담당 관	35,511	38,616	3,105	19	18
영유아담당관	1,725,302	1,624,389	-100,913	14	12
아이돌봄담당 관	43,493	43,476	-17	8	6
아동담당관	478,227	479,147	920	25	27
가족담당관	164,427	168,646	4,219	25	24
아동복지센터	147	147	0	2	2
소계	2,513,450 75.8%	2,419,042 75.0%	-94,408	95	91
순수 시비 사업					
사업명	예산			사업수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증감액	2024년	2025년
저출생담당관	74,050	75,526	1,476	11	14
양성평등담당 관	53,560	51,178	-2,382	26	23
영유아담당관	396,766	387,868	-8,898	20	19
아이돌봄담당 관	48,121	58,656	10,535	12	10
아동담당관	181,643	188,904	7,261	21	19
가족담당관	45,137	45,034	-103	18	18
아동복지센터	1,297	917	-380	4	3
소계	800,574 24.2%	808,083 25.0%	7,509	112	106
총계	3,314,023 100.0%	3,227,126 100.0%	-86,897	207	197

*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계와 일치하게 작성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2024년 예산은 최종예산 기준

사.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25년 여성가족실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원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31개로, 여성가족실 총 세출예산 대비 90.9% 임.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여성가족실 총 예산의 17.1%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이 13.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 11.4%,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10.9%,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이 6.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을 제외하고 기관보육 증가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과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은 감액 편성됨.

<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	사업명	2024년 예산(최종)	2025년 예산	증감액	실 예산 대비 비율
합계			3,037,818	2,934,482	△103,336	90.9%
1	저출생담당관	첫만남 이용권 지원	66,289	64,578	△1,711	2.0%
2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9,150	17,235	△1,915	0.5%
3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5,245	15,924	679	0.5%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33,496	25,684	△7,812	0.8%
5	양성평등담당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8,409	18,447	38	0.6%
6	영유아담당관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9,220	553,403	64,183	17.1%
7		부모급여 지원	583,424	426,488	△156,936	13.2%
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63,010	366,374	3,364	11.4%
9		특화보육 지원(자체)	54,904	53,490	△1,414	1.7%
10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4,930	53,054	△1,876	1.6%
11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95,078	192,426	△2,652	6.0%
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7,461	103,772	△3,689	3.2%

연번	부서	사업명	2024년 예산(최종)	2025년 예산	증감액	실 예산 대비 비율
13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90,465	94,970	4,505	2.9%
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차용선지원자체	34,870	34,959	89	1.1%
15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자체)	28,054	27,526	△528	0.9%
16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22,661	24,547	1,886	0.8%
17		가정양육수당 지원	36,866	23,788	△13,078	0.7%
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818	15,801	△17	0.5%
19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36,202	36,684	482	1.1%
20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25,889	33,670	7,781	1.0%
21	아동담당관	아동수당 지원	382,246	353,053	△29,193	10.9%
2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1,404	100,599	△805	3.1%
23		아동급식지원	33,174	33,989	815	1.1%
24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6,201	29,386	3,185	0.9%
25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695	27,556	23,861	0.9%
2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24,963	25,558	595	0.8%
27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4,286	15,789	1,503	0.5%
28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9,933	10,872	939	0.3%
29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213	10,787	574	0.3%
3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7,314	78,582	1,268	2.4%
31		아이돌봄 지원(보조)	62,948	65,491	2,543	2.0%

○ 앞에서 언급한 5건의 사업은 여성가족실 총 예산 대비 58.6%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부담 경감 및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 관련 예산으로, 특히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금액이 편성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아동 수는 감소하나 ‘부모보육료 전액 이전편성 및 영아반 인센티브 등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 641억 8,300만원(13.1%) 증액되었으나 2022년 신규로 추진한 이후 전년도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였던 ‘부모급여 지원’에 경우 기관 보육을 선택하거나 출산율 저하에 따라 1,569억 3,600만원(26.8%) 감액되었음.

아.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

1) 2025년 신규사업 현황

- 2025년 신규예산 사업은 총 10건, 145억 7,394만원 편성됨. 전년도는 청년자율예산 신규사업으로 사실상 여성가족실의 신규예산이 전무하였으나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관련 신규사업이 107억 2,100만원(73.5%) 편성됨.

< 2025년 신규사업 내역 >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1	저출생담당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1,92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임신,출산,양육친화, 일생활균형을 지향하는 서울시 내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친화 및 일생활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 적립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 추진방법 : 여성가족재단 대행
2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5,198,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공공임대 주택 미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등)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 추진방법 : 여성가족재단 대행
3		1인 자영업자 등 임신부 출산급여 지원	1,86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1인 자영업자 등 임신부에 출산급여 90만원 추가 지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4				※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기 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673,600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배우자, 자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휴가 시작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5	아이돌봄 담당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및 지원	58,250	○ 사업대상 : 서울시 신축기존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지(300세대 이상)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서울시 신축기존 공동주택단지 중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지표에 적합한 대상단지에 대하여 예비인증/본인증/유지관리인증 부여
6	아동담당관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174,000	○ 도입배경: 2024. 7. 19.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보호출산 제도 시행 ○ 사업개요 :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긴급 보호비 지원 - 보호출산 신생아 1인당 최대 3개월간 매월 1백만원 긴급 보호비 지원
7		초등학생 대상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912,280	○ 사업대상 : '25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25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11만3천여명)에게 휴대용 방범벨 지원 ○ 추진방법 : 초등학교 별로 신청받아 대상 아동에게 배부
8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설치 운영	1,794,066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예비초등초등학생 6 ~ 12세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어린이 마음건강.적성 진단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운영 등 ○ 추진방법 : 민간위탁 공모 추진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9		시설생활아동 진로설계 지원	3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 100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예체능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초중등 아동의 특기적성 개발비용 지원(레슨비, 교재비, 장비구입비 등 연간 1인당 3,600천원) ○ 추진방법 :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재배정으로 시설 사업비 지원
10	가족담당관	서울가족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612,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가족해체로 점차 악화되는 '가족의 결속력·유대감 강화' 필요 - 서울 역사와 함께한 서울시민이 보유한 생생한 가족의 이야기와 자료보존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종로구 낙산길 202-15, 2개동, 연면적 763㎡ - 위탁기간 : 2025.3.~2028.2.(3년) - 위탁사무 : 서울가족이야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 서울가족기록 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서울가족이야기관 전시·행사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서울가족이야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지역활성화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 운영방안 : 수탁기관 공모 후 민간위탁 ('25년5월개관) - 운영인력 : 총4명(센터장1,직원3명)

2) 2025년 종료사업 현황

- 2024년에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총 21건으로 98억 3,4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종료사업 내역 >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24년 최종예산	미편성사유
합 계 (21개 사업)			9,834,015	
1	저출생담당관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40,000	○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양성평등담당관에 관련 예산 편성
2	양성평등담당관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315,000	○ 사업운영 종료(2023.12.31.)
3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354,995	○ 협약 기간 만료('24. 6. 30.)에 따라 센터 운영 종료
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8,168	○ 국고보조금 가내시 반영(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8059)
5		국고보조금 반환	206,480	○ 24년 결산결과 반영하여 추경으로 편성 예정
6	영유아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생활 SOC복합화)	2,264,000	○ 중앙부처 한시추진('20년~'24년) 사업종료
7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	948,000	○ '24년 중앙부처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 편성한 사업이며, '25년 선정 여부 불투명하여 전액 감액
8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집행잔액 반환	688,080	○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집행잔액 반환액 반영(반환액 없음)
9	아이돌봄담당관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57,400	○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미편성
10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997,326	○ 2025년 「학교돌봄터 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통합(2024년에는 학교돌봄터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로 별도 편성)
11		거점형 키움센터 기자재비 지원	180,670	○ 2025년 개소 예정 센터 부재에 따라 사업종료
12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30,000	○ 25년 해당사업 미추진에 따른 감액

연번	부서	사업명	'24년 최종예산	미편성사유
13		국고보조금 반환	472,793	○ 국고보조금 반환금(균특회계)로 편성
14	아동담당관	마음치유 그룹홈 운영 지원	300,000	○ 타 사업(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으로 이관
15		아동의 정보접근권 보장 환경 조성	40,000	○ '24.12.31. 사업종료
16		서울어린이 정책 박람회 참여 및 홍보 지원	165,000	○ '24.12.31. 사업종료
17		자치구 자립지원 특화사업 지원	300,000	○ '24.12.31. 사업종료
18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843,492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인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가 '25년 보호치료시설로 기능 개편됨에 따라 사업 종료
19		가족담당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393
20	자치구 가족센터 건립		1,605,000	○ 도봉구 자치구 가족센터 건립 지연으로 여성가족부와 협의 하에 2026년 예산 재편성
21	아동복지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17,218	○ 2022년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완료

자. 세부 사업별 검토 의견

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규) : 사업별설명서 p.85

① 예산현황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 주거비를 2년간 총 720만원 지원하는 전액 시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51억 9,865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5,198,650	(x-) 5,198,650	(x-)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0	(x-) 0	(x-) 4,650	(x-) 4,650	(x-) 1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 0	(x-) 0	(x-) 5,194,000	(x-) 5,194,000	(x-) 100

- 예산안의 주요 산출 근거를 보면 ①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콜센터 인건비 2억599만원 ②무주택 가구 주거 지원비 49억 6,800만원 ③홍보비 2천만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하여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대행할 예정임.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산출근거(안)〉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1,380가구*3,600,000원 = 4,968,000천원 ○ 인건비 = 205,999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담인력 42,402,028원*3명 = 127,207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76,000원*6명*3개월 = 33,768천원 - 콜센터 지원인력 1,876,000원*2명*12개월 = 45,024천원 ○ 운영비 사업홍보물 제작 등 = 20,001천원

② 주요쟁점 :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 동 사업은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1,380가구에 1가구당 월30만원씩 연간 360만원 지원하고자 49억 6,800만원을 신규편성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7월 17일에 재협의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보완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재요청하였고(8.30)

▶예산안 제출 시점(24.11.1)을 경과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에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안건의 의결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2)제출

○ 한편 집행부는 동 사업을 지난 4월 29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지원”) 대시민 홍보를 하였으며 11월 현재까지 25건의 민원이 있었음.

- 이는 서울시가 사전절차 이행과 조례 근거 마련에 앞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여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도자료와 뉴스를 통해 접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③ 주요쟁점 : 추계 및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주택 자녀출산 1,380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개요(안)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 사업목적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가 매월 매몰비용으로 지출하는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출산가구의 서울 정주(定住) 및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2025.1.1.이후 출산)
- 지원규모 : 1,380가구 (연간 평균 신규지원 약 2,760가구)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1년 36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출생시 1년씩 최대 2년 연장)
- 수행기관 : 서울시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행사업)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체(1회당 360만원), 12개월분씩 총 2회 지급

- 예산안은 1,380가구의 1년 월세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총 720만원) 51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대상가구 추계와 월 주거비 지원액 사항 등을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계한 가구수 산출근거를 보면 「2022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기준으로 무주택·출생가구·중위소득 180%이하 ▶주택면적 85㎡, 타 제도 미중복, 전세 3억원 이하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760가구의 50%를 신청률로 하여 1,380가구로 추계함.

< 지원대상 가구 수 산출 근거 >

< 1단계 > 지원모수 추정 (2022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기준)

- ① 서울시 전체 가구수 = 4,046,799가구
- ② ①에서 출생연도가 2021년, 2022년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수 = 85,475가구
- ③ ②의 무주택 임차 가구수 = 39,366가구
- ④ ③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수(2022년 기준) = 36,616가구
- ⑤ ④에서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가구수 = 32,459가구
- ⑥ ⑤에서 타 주거지원 프로그램 미수혜가구수 = 17,177가구

< 2단계 > 전세가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추계 (22년 6월 기준-전월세 전환율 4.8% 적용)

- ⑦ 17,177가구 중에서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 = 11,535가구(2년 기준) ⇒ 연 5,767가구
 - ⑧ 신청률 약 50% 반영시 = 총 2,760가구 (연 5,767가구×신청률 약 50%) ⇒ 월 230가구
- '25.1.1~6.30 출산가구 지원시 : 총 1,380가구

- 해당 조사는 2021년 실태를 2022년에 조사한 통계자료로서 2023년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출생율 변동¹⁾,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타 지역 전출인구 증가²⁾, 전세가격지수 상승³⁾ 등의 사회적 상황 변화가

1) 통계청(2023). 서울 합계 출산율 0.55명

2) 통계청(2023). 국내인구이동. 서울 → 경기·인천 전출인구(325,317명) 중 61%(199,527명)가 '가족·주택' 사유

3) 통계청(2024.9). 유형별 전세가격지수. (2023.9) 90점 → (2024.9) 93.5점 (100점 기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의 가구수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월세비 지원과 관련하여 산출 근거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월세 차액분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지정하였는데 최근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주택 월세가격은 월 110만원선이고 중위주택 월세가격은 월 92만원임.⁴⁾
 - 동 사업이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목적에 따라 월 30만원의 지원금액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인지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 효용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정부나 서울시의 유사한 ‘주거지원’ 대책과의 차별성이나, 사회보장위원회 재협의 결정 사유와 같이 월세지원이 실제 주거비로 사용되는지 부정사용에 대한 방안도 검토 필요함.

<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결정사유 >

- 출산가정의 주거안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수의 주거 지원 사업과 통합·조정을 통해 출산가정 내 주거비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재설계 필요
 - ① (중복해소) 기 시행 중인 국토부 신생아 특례 대출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월세 지원 사업 등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문제 해소 필요
 - ② (주거취약계층 우선 지원) 출산가정 중 주거취약계층*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거안정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주거취약계층 우선 지원 검토 필요
 - * (예시) 다세대주택 거주(1주택 소유), 임대주택 거주 출산가정은 주거비 대상 제외이나 전세 거주 고소득 출산가정은 지원
 - ③ (실제 주거비로 사용 확인) 실제 주거비 경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거안정 목적에 부합하는 지급기준 (대출여부 등), 사후 확인 방안(월세 지급 확인 등) 마련 필요

4) 한국부동산원(2024.9).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규) : 사업별설명서 p.92

① 예산현황

- 출산·육아 지원제도 영역 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의 '배우자'에게 출산 휴가급여를 지원하고자 전액 시비로 16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1,673,600	(x-) 1,673,600	(x-)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0	(x-) 0	(x-) 1,673,600	(x-) 1,673,600	(x-) 100

② 주요쟁점 : 예산 사전절차 이행 미흡

- 동 사업은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배우자가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출산급여 만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신규사업임.
- 신규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서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반드시 예

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예산안 제출 시점(24.11.1)을 경과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이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지난 4월 23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시민 홍보 중에 있어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가세요” 서울시, 전국 최초 지원 나선다.(24.4.23).

- 또한 동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에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안건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42)제출

○ 한편, 「지방보조금법」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2024)」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집중심의 대상에 해당함.

- 그러나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의위원회」(24.10.14)심의에 의뢰하여 ‘집중심의’가 아닌 목록심의대체 안건과 함께 ‘일괄심사’ 통과되었음 (심의결과 ‘적정’).

- 동 사업은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과⁵⁾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

5)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5조제1호6)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저출생 정책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기는 하나,

- 지방보조금 사업 적정성과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등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 이므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집중심의’를 통해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받았어야 했음.

③ 주요쟁점 : 대상자 추계 정확성 검토

- 동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인 ‘임금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간 유급으로 법적 보장되어 있는 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인 ‘남성 1인 자영업자 등’은 배우자 출산 시 휴업 또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보험 지원이 없는 전무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가 고용보험 출산 급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등에도 임금근로자 수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평등한 출산환경 조성 및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은 의미 있음.
-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과 고용부와 사업주가 각각 10일씩 유급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나 이는 ‘임금근로자’ 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적 한계가 있음.

6)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 동 사업의 상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급여 사업개요(안)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 사업목적 : 출산·육아 지원제도 영역 밖에 있는 임신부 1인 자영업자 등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고자 배우자 출산시 출산급여 지급액 보장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 배우자 출산일 24.4.22 이후
- 지원규모 : 연간 2,092명
-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통상임금수준 8만원x10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5일분 401,910원, 24년)
- 지원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지급요건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수행주체 : 서울시-자치구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현금 이체
- 비고

구분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법)	서울시 신규사업 (배우자 출산급여)
대상자	임금근로자	출산 아내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법적 보장일수	10일	(법적 보장일수 없음)
지원금액	① 고용노동부 : 401,910원(5일분) 우선지원대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401,910원(5일분) 지원 ② 사업주가 나머지 5일부담	최대 800,000원 (10일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10일분의 통상임금(803,820원) 수준 지원

○ 동 사업의 취지와 사업 타당성은 이해되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 추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92명*800,000원 = 1,673,600천원

- 동 사업의 수혜자는 임신부를 배우자로 둔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으로 연간 2,092명을 추산하고 있으나, 1인 남성 자영업자의 기혼 여부와 출산 가능 연령대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지 않아 구체적인 참여 대상의 확보 애로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의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임.
- 특히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비정기적 소득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기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⁷⁾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 산출근거 >

- 1인 자영업자: 1,032명
= {51만6천명('23년) × 0.4%(출생아 비율) × 50%(남녀비율)}
- 노무제공자 등: 1,060명
= {약 53만명 추산('22년) × 0.4%(출생아 비율) × 50%(남녀비율)}
- ※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년 행정구역(시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청
- ※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계('21.2.)
- ※ 한국고용정보원 종사자 규모 추계자료('21.12.),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입직자수 참조('22.4.),

- 따라서 남성 1인 자영업자 등의 기혼 여부 및 출산 적령기인 30대 ~ 40대 사이의 배우자 출산률을 고려하는 등 대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사전 수요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유엔인구기금(2024). 2023 세계인구보고서. 보도자료 인용(뉴스1.2023.4.27.)

3) '안심물품지원' 사업 (계속) : 사업별설명서 p. 271

① 예산현황

-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 1인가구, 1인점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액 시비로 49억 8,130만원 편성됨.

※ 안심장비 지원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안심홈세트 지원예산 통계목 변경(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무관리비)

〈 '안심물품지원'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50,000	(x-) 550,000	(x-) 4,981,300	(x-) 4,431,300	(x-) 806
사무관리비	(x-) 0	(x-) 0	(x-) 4,741,300	(x-) 4,741,300	(x-)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550,000	(x-) 550,000	(x-) 240,000	(x-) Δ310,000	(x-) Δ56

〈'안심물품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 34,093원*100,000개 = 3,409,300천원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홍보 17,000,000원 = 17,000천원 ○ 안심경광등 구매 102,000원*10,000개 = 1,020,000천원 ○ 안심경광등 외부 사인보드 제작 2,000원*10,000개 = 20,000천원 ○ 안심경광등 홍보 15,000,000원 = 15,000천원 ○ 안심장비 지원(안심홈세트) 260,000,000원 = 26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안심장비 지원사업 22,000,000원*25개 자치구 = 550,000천원	○ 안심장비 지원(스토킹피해 지원 등) 240,000,000원 = 240,000천원

- ‘안심물품지원’ 사업목적은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안심경광등’, ‘안심장비 지원(안심홈세트)’ 3가지 용품지원을 통해 여성, 1인가구, 1인점포 등 안전취약계층 등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임.
- 2024년 10월 기준, 지원현황은 ‘휴대용 안심벨(헬프미)’는 20,000개, ‘1인 점포 안심경광등’ 5,000개, ‘1인 가구 안심홈세트’ 1,575건 배포가 완료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안심 경광등 업종별 현황’

계	미용	공인 중개사	음식점	네일	카페	피부	노래방	약국	주점	슈퍼 마켓	기타
5,000 (100%)	1,207 (24.1)	809 (16.2)	757 (15.1)	499 (10.0)	469 (9.4)	294 (5.9)	213 (4.3)	122 (2.4)	72 (1.4)	49 (1.0)	509 (10.2)

- ‘안심 홈세트 자치구 지원 현황’

계	송파구	광진구	은평구	관악구	성동구	금천구	강북구	구로구	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양천구
1,575	200	170	128	100	94	90	85	76	67	56	64	62
강동구	강서구	용산구	중구	서대 문구	도봉구	강남구	성북구	영등 포구	종로구	동대 문구	노원구	서초구
60	56	41	36	33	32	30	26	23	21	15	10	- (미지원)

< ‘안심물품지원’ 사업 주요내용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지원조례」 제6조(안심물품 지원 사업 대상 등)
- 사업목적: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 1인가구, 1인점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물품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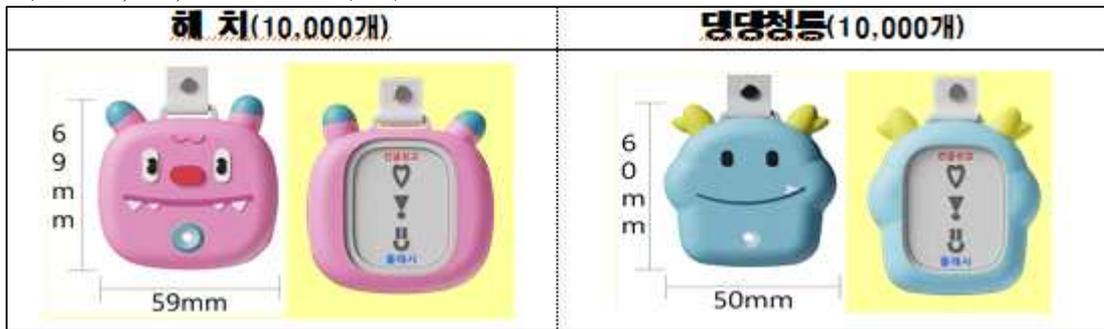
1)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시 소재 직장·학교에 소속된 사람

지원규모 : 100,000명

지원물품 : 안심이앱 연동 휴대용 SOS 안심벨(헬프미)

소요예산 : 3,426,300천원(전액 시비)



2)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관내 1인이 상시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

지원규모 : 10,000개

지원물품 : 긴급신고 시 안심이충팔센터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

소요예산 : 1,055,000천원(전액 시비)



3)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1인가구(성별 및 주거유형 상관없이 지원)

사업내용 : 안전취약계층에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하는 거주환경 조성

추진실적 : 2개 자치구('19년) → 11개 자치구('20년) → 전 자치구 확대('21년)

소요예산: 500,000천원(전액 시비)



② 주요쟁점 : 안심벨 보급 확대시 배포 우선순위 검토

- ‘안심물품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살펴보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자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우려자’, ‘사회안전약자’가 사업대상임.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양식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심물품지원’ 사업목적은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여성’, ‘1인 가구’, ‘1인 점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안심경광등’, ‘안심장비’ 3가지를 ‘안심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의 경우 조례상 우선 지원대상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우려자’, ‘사회안전약자’이거나 ‘안심물품지원’ 사업 목적에 따른 여성, 1인가구, 1인점포를 한정으로 배포해야 하였으나 서울시 거주자 및 직장·학교 소재지가 서울시인 사람을 모두 신청받아 배포하였음.
- 아울러 신청 당시부터 홈페이지상의 별도 개인정보 확인과정 없이 휴대폰 번호만 인증을 거친 뒤 신청자가 주관적으로 체크한 사항을 기준으로(성별, 가구형태, 필요한 이유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배포하였음. 이러한 과정에 안심물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약자 등이 소외되

지 않았는지, 단순 호기심과 무료 물품이라는 이유로 신청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심야택시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안전에 취약한 대상을 포함하여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3만 개 배포를 앞두고 있는데 ‘사회안전약자’의 측면에서 배포 시급성과 우선순위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보도자료(24.8.5)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신청 쇄도…100분 만에 2만 개 조기 마감”

※ 서울시 보도자료(24.8.13) “‘오세훈표 일상안심’ 1인점포 안심경광등, 나홀로 사장님 안전 지킨다”

- 요컨대 기존 홈페이지 신청자 순으로 일괄 배포가 아닌 ‘사회안전약자’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③ 주요쟁점 : 앱 연동 확대를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의 시작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3년 10월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해 “여성안심물품 지원” 사업으로 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비상벨 및 안심 경보기 세트(안심물품 지키미(ME))를 배부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2024년 4월 2일 기준으로 총 7,792세트가 배부되었음.

■ 안심물품 지키미(ME)란?

· 지키미 세트 안내

	<p>휴대용 SOS 비상벨</p> <p>기기 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바로 발송되고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p>		<p>안심 경보기</p> <p>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입니다.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	---	---	--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 지급 안내

①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

- 12월 28일 낮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 2024년 1월 4일까지 연장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많이 기다리셨죠? 안심물품 '지키미' 28일부터 신청, 2023년 12월 27일

- 이후 '안심이 앱'과 연동한 '휴대용 안심벨(헬프미)'를 신규 제작하여 2024년 9월 20,000개를 배포하였으며 하반기 30,000개 배포를 추가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① 서울시 해치 활용 키링형태 디자인 ② 자치구 CCTV 관제센터 대응 시스템을 구축 ③ 신청요건 간소화 및 택배 ④ 헬프미 전용 콜센터 운영 등을 계획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안심벨(헬프미)를 24년 5만 개 배포, 25년 10만개 배포 외 함께 '안심이앱' 관제센터 인력을 증원하고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중 '안심이 관제인력' 인건비를 125%(11억5백만원) 증액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안심이앱' 관제인력'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안심이 관제인력 인건비 34,999,360원*2명*25개 자치구*50% = 874,984천원	○ 안심이 관제인력 인건비 39,701,726원*4명*25개 자치구*50% = 1,985,087천원

- 한편 시민들의 호응으로 조기 신청마감된 초기와 달리 11월 현재 기준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의 '안심이앱' 연동율은 20,000개 중 64.7%(12,940대)⁸⁾이며, 8천 명의 미연동자에게는 5차례에 걸쳐 독려문자와 회수안내를 하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추세라면 12월 2차 지급(3만개) 후에도 약 35% 정도가 '안심이앱'과 연동하지 않고 실 사용을 하지 않는 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어, 독려문자 발송, 회수 안내, 콜센터 운영 등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의 투입도 우려됨.
- 아울러 배포된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은 '안심이 앱' 연동시 개인정보(성별, 연령, 주소지) 파악이 가능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집행부서에 확인한 결과 '안심이 앱'에 연동된 사용자의 연령대, 성별, 활동 지역(자치구, 시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없으며, '신청당시 현황' 파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1차 신청자 현황〉

(서울시 제공. 24.11.13)

성별		여성					남성	
25,000(100%)		22,207(88.8%)					2,793(11.2%)	
연령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5,000 (100%)	3,754 (15.0%)	4,938 (19.8%)	9,287 (37.1%)	3,653 (14.6%)	1,566 (6.3%)	1,802 (7.2%)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25,000 (100%)	517 (2.1%)	470 (1.9%)	640 (2.6%)	701 (2.8%)	1,065 (4.3%)	912 (3.6%)	963 (3.9%)	1,123 (4.5%)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678 (2.7%)	750 (3.0%)	1,157 (4.6%)	1,232 (4.9%)	897 (3.6%)	1,126 (4.5%)	959 (3.8%)	1,459 (5.8%)	1,120 (4.5%)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89 (2.4%)	1,275 (5.1%)	1,105 (4.4%)	1,512 (6.0%)	893 (3.6%)	1,209 (4.8%)	1,439 (5.8%)	1,209 (4.8%)	

8) 서울시 제공자료(24.11.13.9시 기준)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의 사업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향후 '안심이 앱' 연동확대에 따른 실효성 제고와 관제시스템 구축, 전용콜센터 운영과 함께 앱과 연동한 실제 사용자 현황파악, 경찰 연계 실적 및 관제센터 접수 내용 분석, 범죄예방 변화 측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성과를 줄일 수 있는 지표설정과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특화보육 지원(자체)' 사업(교사 대 아동비율) (계속)

: 사업별설명서 p. 333

① 예산현황

- '특화보육 지원' 사업은 다양한 특화보육사업 운영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틈새·취약보육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전년대비 14억 1,442만원 감액(3%)된 534억 8,991만원으로 편성됨.

〈'특화보육 지원(자체)'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4,904,335	(x-) 54,904,335	(x-) 53,489,910	(x-) △1,414,425	(x-) △3
사무관리비	(x-) 68,380	(x-) 68,380	(x-) 20,340	(x-) △48,040	(x-) △7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54,775,955	(x-) 54,775,955	(x-) 53,409,570	(x-) △1,366,385	(x-) △2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 60,000	(x-) 60,000	(x-) 60,000	(x-) 0	(x-) 0

- 특화보육 지원사업비는 전액 시·구비(분담비율 5:5)로 자치단체 경 상보조금과 자치구 매칭금액 포함 총 소요예산은 1,069억 7,982만 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기타연장(24시간, 휴일, 야간연장, 거점 형 야간) 어린이집 지원 ▶365열린 어린이집 지원▶다문화통합 어린 이집 지원 ▶종교시설 어린이집 지원▶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 영비 지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0세 전담반 운영지원▶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주말어린이집 지원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운영 등임.
- ‘특화보육 지원’ 사업 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경우 교 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하여 보육교사 업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전년대비 18억7천5백만 원 증액(19.9%)된 112억 8,396만원으로 편성됨.

* 보건복지부(2024) 보육교사1명 당 아동 수 :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5세 20명

- 주요 증액 내역은 ① 신규 지정 366개반 확대(’24년1,134개반 → ’25년 1500개반) 확대 ② 임금상승을 반영 인건비 증가임.(’24년 월평균 2,954천원 → ’25년 3,058천원, 증액 104천원,3.5%)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예산 산출내역〉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 9,408,377천원 - 국공립, 서울형 기준(400개소) 2,787,710원*400개소*12개월*50% = 6,690,504천원 - 신규 지정(210개소) 2,588,450원*210개소*10개월*50% = 2,717,87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 11,283,960천원 - 국공립, 서울형 등 기존(1,134개반) = 9,819,960천원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323개반) 3,058,390원*323개반*12개월*50% = 5,927,160천원 ▷ 운영비지원 어린이집(811개반) 800,000원*811개반*12개월*50% = 3,892,800천원 - 신규 지정(366개반) 800,000원*366개반*10개월*50% = 1,464,000천원

② 주요쟁점 : 운영비 투명성 확보 및 보육환경 개선 성과측정

- 동 사업의 목적은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감소,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 증가 등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서비스 향상임.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사업 개요 >

- 추진경위: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간 공동 시범사업 추진 건의(' 20.10월~)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21.4월~)
- 2022년 사업개요
 - 대상 : 50개소(국공립제외)
 - 내용 : 시설별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지원(50명)
 - 개선비율 : 만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1:3 ⇒ 1:2
만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1:15 ⇒ 1:10
- 2023년 사업개요
 - 대상 : 400개소(국공립·서울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법인단체 등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 내용 : 시범반 보육교사(400명) 인건비 전액 지원
 - 개선비율 : 22년도와 동일
- 2024년 사업개요
 - 대상 : 전 유형(동행어린이집 포함)
※ 동행어린이집 : 어린이집간 거리200m이상 정원충족률 70%이하
 - 내용 : 22년~23년 기지정 시설 400개소 보육교사 인건비 100%
24년 신규 지정 시설 600개소 운영비(정원 감소 아동 보육료)
 - 개선비율 : 동일

< 최근 3년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시비)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발생사유
2024. 10월 기준	9,408,377	9,408,377	-	-	
2023	3,894,490	3,662,646	231,844	5.9%	운영기준 미충족 시 지원 중단으로 집행잔액 발생
2022	4,804,184	4,740,879	63,305	1.3%	어린이집별 교사 호봉 차이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보육현장과 영유아 부모의 높은 만족도와 보육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하여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사업 참여 대상을 계속 확대해 왔음.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선정 기관 현황 〉

연도	계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기타
2021	110	110	-	-	-	-
2022	160	110	50	-	-	-
2023	400	300	100	-	-	-
2024	1,134	493	185	208	210	38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의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면 ‘정원 대비 현원 1인당’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임.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운영비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분	0세반	장애아반	1세반 (1·2세 혼합반)	2세반	3세반 (3·4세 혼합반)
정원 개선	3명→2명(1명↓)	3명→2명(1명↓)	5명→4명(1명↓)	7명→6명(1명↓)	15명→10명 (5명↓)
지원금액	540천원 (1명 보육료)	587천원 (1명 보육료)	475천원 (1명 보육료)	394천원 (1명 보육료)	1,400천원 (280천원×5명 보육료)

※ 「보건복지부(2024)지침」 기관보육료 내역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한편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등)에 따라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2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 유지하는 반에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기관보육료’를 지급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에 참여하는 0~2세반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관보육료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관보육료를 동시에 지급 받고 있으나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모든 미충족 반이 아닌 1개반만 지원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단위 : 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민 간	(정부) 영아반인센티브	629,000	342,000	232,000			

- 동 사업은 내실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영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보육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임. 다만 저출생 시대를 맞아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시범반 운영시 교사를 채용하여 교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과 달리 인건비 지원에서 기관보육료(운영비) 지원으로 사업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보육료(운영비) 사용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감독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즉 운영비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육 환경 변화도 파악 등 지원 예산이 실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및 환경 개선을 가져왔는지 사업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의 중요성을 비추어보면 계속하여 전액 시·구비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임.

5)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계속) : 사업별설명서
p. 422

① 예산현황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조성하여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7억 8,153만원 증액된 336억 7,01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5,888,650	(x-) 25,888,650	(x-) 33,670,180	(x-) 7,781,530	(x-) 30
사무관리비	(x-) 32,400	(x-) 32,400	(x-) 33,400	(x-) 1,000	(x-) 3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6,056,250	(x-) 6,056,250	(x-) 13,764,780	(x-) 7,708,530	(x-) 127
자치단체 자본보조	(x-) 19,800,000	(x-) 19,800,000	(x-) 19,872,000	(x-) 72,000	(x-) 0

- 2024년도부터 구립과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예산을 분리하여 동 세 부사업에서는 구립 키즈카페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시립 키즈카페 관련 설치비, 민간위탁금 등 예산은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세 부사업에 별도 편성하였음.

- 주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24년도 보다 77억 853만원(127%) 증액된 137억 6,478만원으로 ▲기존 설치된 키즈카페(75개소) 운영비 12개월분(114억 7,500만원)과 신규 설치하는 키즈카페(42개소) 운영비 3개월분(16억 650만원), ▲선도 자치구 운영비 추가지원(6억 8,328만원)이 편성되었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구분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	= 137억 6,478만원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기존) 75개소*12,750,000원*12개월	= 114억 7,500만원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신규) 42개소*12,750,000원*3개월	= 16억 650만원
	- 선도자치구 운영 추가 지원 39개소*2,190,000원*8개월	= 6억 8,328만원

- '선도 자치구 운영비 추가지원'은 그간 자치구별 조성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 업무가 과중되었음.
 - 이에 자치구 전담인력 추가배치와 토·일 연장 운영 등 조건 실행을 전제로 선도 자치구를 선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설치·운영되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에 인건비(2명→3명)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증 월 평균 50만원)하는 내용으로 '24년도에 8개 자치구9)가 선정되었음.

〈선도 자치구 선정조건 및 운영비 추가지원10)〉

선정조건	지원사항
① 자치구 전담인력 1명이상 추가배치 ② 토·일 연장운영(20시까지): '24.9.30.限 ③ 이용인원 정원대비 140%까지 확대 ④ 그 외, 시책사업(이용료 인상 등) 협조	○ (선도 자치구 지원확대) - 인건비: 2명까지 市100% → 3명까지 市100% - 운영비: 평균 50만원 증액 ○ (기타) 서울시장 표창 우선 수여

9) 8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 '24년 서울형 키즈카페 선도자치구 선정 결과보고, 아이돌봄담당관-1314, 24.7.30.

10) '서울형 키즈카페 활성화를 위한 선도 자치구 지원 및 선정 계획, 아이돌봄담당관-8196, 24.6.27.

- 자치단체자본보조는 '24년보다 7,200만원 증액된 198억 7,200만원으로 ▲'24년도에 키즈카페로 선정되어 '25년 준공예정인 5개소에 대한 개소당 준공금 3억원(평균 공사비의 50%)과 ▲'25년도 54개소 신규 설치를 목표로 개소당 설계비(3,744만원)와 평균 공사비 50%(3억원)가 편성되었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4년 최종예산 (추경포함)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 자본보조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지원 = 198억원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지원 = 198억 7,200만원
	- 설계비 59개소*35,593천원 = 21억원	- 준공금 5개소*300,000천원 = 15억원
	- 공사비 59개소*300,000천원 = 177억	- 설계비 54개소*40,222천원 = 21억 7,200만원
		- 공사비 54개소*300,000천원 = 162억원

- 집행부서는 '24년도부터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기간이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단계에 맞춰 자치구에 (설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신규설치 공사비를 개소당 평균 공사비 6억원(300㎡x200만원)의 50%(3억원)로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② 주요쟁점 : 세밀한 예산추계로 계획적인 확대 필요

-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는 '21년 시장 요청사항에 따라 기존의 자치구에서 조성하던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부모 이용공간을 추가하여 키즈카페로 기능을 확대하였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립 및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음.

- 키즈카페 조성에 관한 예산은 여성가족실 뿐만 아니라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등 타 실국에도 편성되어 있으며 '24년도 10월말 기준 구립 141개소, 시립 11개소가 키즈카페 설치공간으로 선정되어 구립 44개소, 시립 5개소가 개관하여 운영 중임.
- 그 중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과 관련해 여성가족실에서는 124개소를 키즈카페 설치공간으로 선정하였고 '24년도 10월말 기준 39개소¹¹⁾가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중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현황>

(‘24.10월말 기준, 단위:개소)

구분	구립			시립		
	설치공간 선정	설치 공사중	설치완료 개관·운영	설치 공간선정	설치 공사중	설치완료 개관·운영
소 계	141	97	44	11	6	5
여성가족실	124	85	39	3	1	2
미래한강본부·정원도시국·기타	17	12	5	8	5	3

- 여성가족실에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해 695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자치구에 투입되고 124개소가 설치장소로 선정되었음에도 '24년도 10월말 기준 39개소만 설치·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85개소는 공사중 또는 해당 장소 설치불가로 대체지 검토 중임.
- 설치·완료가 매년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속 지적하였고,

11) 집행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12월말까지 31곳이 추가로 개관 예정임.(용산1, 동대문4, 성북1, 도봉4, 은평3, 서대문3, 양천2, 강서1, 구로2, 동작7, 관악1, 중랑1, 송파1)

- 이에 대해 집행부서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이 자치구와 협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공간확보, 설계, 공사, 개소 등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개소시점이 늦어지고 있으며 향후 세부 공정별 밀착관리를 통해 개선해 나겠다고 하였음¹²⁾.

○ 그러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가 늦어지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3년도에 키즈카페 설치공간으로 67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3개소¹³⁾ 설치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24년도에는 42개소를 설치공간으로 선정하였으나 1개소만¹⁴⁾ 설치완료되어 운영 중임.(※'24.10월말 기준)

<여성가족실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현황>

(‘24.10월말 기준, 단위:개소)

구분	구립		
	설치공간 선정	설치공사중	설치완료 개관·운영
소계	124 (100%)	85 (69%)	39 (31%)
2022년도	15 (100%)	- (0%)	15 (100%)
2023년도	67 (100%)	44 (66%)	23 (34%)
2024년도	42 (100%)	41 (98%)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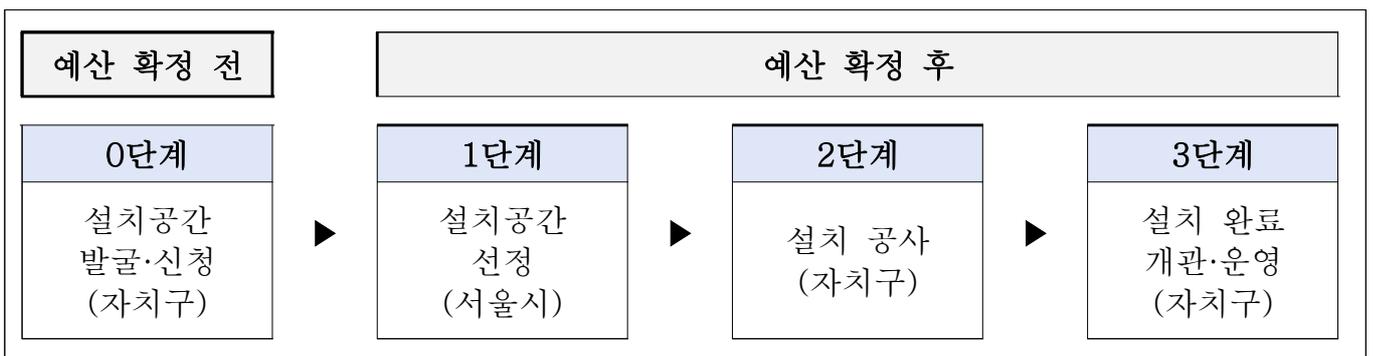
12) 제322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2024.2. 2023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p.115.

13)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12월말까지 20개소가 추가로 개관예정임. (용산1, 동대문2, 중랑1, 성북1, 도봉3, 은평3, 서대문2, 양천2, 강서1, 구로2, 동작1, 관악1)

14)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12월말까지 11개소가 추가로 개관예정임. (동대문2, 도봉1, 서대문1, 동작6, 송파1)

-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3년이라는 기간에 서울시 내 124개소라는 키즈카페 공간을 선정함에 따라 자치구 및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세부 공정별 밀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 예산 편성 전 자치구에 키즈카페 설치공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 해당 공간이 향후 실제 설치 가능한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키즈카페 조성사업은 크게 ① 예산 확정 전 자치구로부터 설치공간을 신청받는 단계(0단계)와 ② 예산 확정 후 신청받은 공간을 심의 후 선정하여 설치공사하고 최종 개관하여 운영하는 단계(1~3단계)로 크게 나뉘어볼 수 있음.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세부공정 단계〉



-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실에서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함에 있어 예산 확정 전, 예산 편성시점의 0단계인 자치구로부터 키즈카페 설치공간을 신청받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간이 실제 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년도에는 59개소를 신규설치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2개소만 선정하였음.

<여성가족실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장소 선정 계획 및 실제 선정>

선정연도	선정 계획 개소수 (A)	실제 선정 개소수 (B)	차이 (A-B)
2022년도	13 (※본예산11, 추경2)	15	-2
2023년도	67 (※본예산32, 추경35)	67	-
2024년도	59	42	17

- 특히 '22년도 사업 초기년도에는 개소당 설치비 단가 조정 등의 문제로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24년도부터 조성유형(신·증축, 리모델링, 전환)별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신규 설치 59개소를 계획하였으나 42개소만 선정하였음.
-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비(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자체단체경상보조금) 예산과도 연결되어 있어 선정 및 설치 개소수가 당초 예산계획과 달라짐에 따라 키즈카페 운영비 편성 예산에서도 계속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및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과목구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발생사유 및 개선방안
'24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단체 경상보조	6,056,250	5,519,696 (10월말 기준)	536,554	8.9%	· 선정지 개소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미집행 · 예산편성시 계획하지 않은 '선도 자치구 운영비 추가 지원' 집행액 226,008천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 762,562천원으로 불용률 12.6%로 보여짐.

연도	세부사업명	과목구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발생사유 및 개선방안
'23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단체 경상보조	2,517,250	1,248,055	1,269,195	50.4%	· 공사 지연, 사전절차 추가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개관 연기로 운영비 불용 발생
'22	서울공공 (안심) 키즈카페 조성	자치단체 경상보조	207,000	59,200	147,800	71.4%	· 선정지 개소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미집행

-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은 '22년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조성비 695억 9,000만원과 운영비 87억 8,050만원이 순수 시비 100%로 투입되고 있는만큼 보다 정밀한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
- '25년도 예산안에서도 자치구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신규로 54개소 확대 설치하기 위해 설계비 21억 7,200만원과 공사비 162억원으로 총 183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 자본보조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지원 = 198억 7,200만원 - 준공금 5개소*300,000천원 = 15억원 - 설계비 54개소*40,222천원 = 21억 7,200만원 - 공사비 54개소*300,000천원 = 150억원

-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고 공사 중인 장소에 대해서는 개소 예상시점에 설치완료가능성 등 다시 한번 점검하고, '25년도 신규 설치로 예산을 편성한 54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공간 발굴·신청을 받고 해당 공간이 실제 설치 가능한지 미리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③ 주요쟁점 : 키즈카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부 및 자치구와 협의 필요

-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는 인건비(필수인력 2명분)와 시설 규모 별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며 시비 100%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3년도부터¹⁵⁾ 인건비(필수인력 2인) 등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자치구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개소당 월 평균 운영비를 1,275만원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 '시비' 지원기준〉

• (시비) 월 지원액 : 평균 1,275만원 (994만원~1,586만원)

구분	종사자	운영비	인건비 부담률	
		월 지원액(단위:만원)		
소형 (150㎡ 미만)	2명	150	2명	시비 100%
중형 (150~500㎡)	3~5명	170	3~6명	시비 30%: 구비70%
대형 (500㎡ 초과)	6명이상	190	7명~	구비100%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준용

-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 관련해 기존 개소하였거나 '24년도 연말까지 개소하여 운영될 예정인 키즈카페 75개소에 대한 운영비 12개월분(114억 7,500만원)과 '25년도 연 중 개소 예정인 키즈카페 42개소에 대한 운영비 3개월분(16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음.

15) '23년도 본예산 편성시 개소당 월 700만원 편성 후 '23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월 1,275만원으로 상향조절함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구분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 = 137억 6,478만원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기존) 75개소*12,750,000원*12개월 = 114억 7,500만원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신규) 42개소*12,750,000원*3개월 = 16억 650만원 - 선도자치구 운영 추가 지원 39개소*2,190,000원*8개월 = 6억 8,328만원

-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실에서 자치구와 협력하여 조성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정원도시국에서 공원 내 설치하는 키즈카페도 포함하여 여성가족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여성가족실에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에서 시장방침 제172호에 따라 ‘26년까지 동별로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서울시 내 총 400개소를 조성하도록 목표하고 있음¹⁶⁾.
- 이에 따라 400개소가 실제 설치가 완료되어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월 평균 1,275만원 기준으로 “매년 612억 원”(400개소 x 1,275만원 x 12개월) 예산이 순수 시비 재원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필수인력 2인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를 계속하여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향후 서울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키즈카페 설치로 인해 시설에 인접한 자

16) 2024년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계획, 아이돌봄담당관-3057

치구의 양육가정에게도 혜택이 있고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비 중 일부를 국비, 구비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도 초창기에 자치구별 키움센터를 확대함에 있어 유희공간 부족으로 일부 키움센터를 임대시설에 설치하였고 2019년부터 서울시가 자치구에 시비 100%로 보증금 및 임차료를 5년간 5억 한도 내¹⁷⁾에서 지원한 바 있음¹⁸⁾.
-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는 등 서울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17) 보증금+임차료 = 5억원 이내, 5년간 지원하고 보증금만 1회(5년) 연장 검토가능함.

18)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보증금 지원 연장계획, 아이돌봄담당관-7895

6)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사업 (계속) : 사업별설명서 p. 824

① 예산현황

-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제1항19)에 따라 양육자 고립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자치구에 공동육아방(前 열린육아방)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구=5:5로 인건비 및 운영비²⁰⁾를 지원하고 있음.
- '2025년 예산안에서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사업은 공동육아방 운영 개소수가 88개소에서 84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846만원 감액된 19억 65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925,053	(x-) 1,925,053	(x-) 1,906,589	(x-) Δ18,464	(x-) Δ1
사무관리비	(x-) 2,000	(x-) 2,000	(x-) 1,000	(x-) Δ1,000	(x-) Δ5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923,053	(x-) 1,923,053	(x-) 1,905,589	(x-) Δ17,464	(x-) Δ1

19)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20) '23년도까지 신규 설치비를 시비 100%로 지원하다가 '24년도부터 신규 시설확충비 미지원 ('24년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계획, 아이돌봄담당관-5102)

② 주요쟁점 : 공동육아방의 키즈카페 전환 공정단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련 부서간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편성 필요

- 자치구별로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설치를 위한 유희공간 부족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용면적 66㎡이상인 공동육아방을 자체 평가 또는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하고 있으며,
 - '22년도 1개소, '23년도 8개소, '24년도 24개소로 총 33개소의 공동육아방이 키즈카페로 전환 중이거나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공동육아방의 소관부서는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이고, 키즈카페 소관부서는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으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 이로 인해 부서 간에 '전환시설(공동육아방→키즈카페)'의 선정단계부터 공정단계까지 세부일정의 부서간 협의 및 공유가 부족하여 정확한 전환 후 개소시점에 따른 알맞은 예산편성이 아니라 전환시설을 포함한 전체 공동육아방 시설(84개소)에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구체적으로 키즈카페 소관 부서(아이돌봄담당관)에서 제출한 키즈카페 현황자료와 공동육아방 소관부서(가족담당관)에서 제출한 공동육아방 현황자료를 비교해보면 24.7월말 기준 공동육아방 8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4개소²¹⁾가 키즈카페로 시설 전환이 확정되었음.
- 다만 집행부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시점인인 24.7월

21) '23년도(1개소)와 '24년도(23개소)

말 기준으로, 전환될 24개소 중 16개소에 대하여 아이돌봄담당관과 가족담당관 부서 간에 공동육아방이 키즈카페로 전환되어 개소하는 시점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음²²⁾.

<공동육아방→키즈카페로 전환지정된 시설의 개소 예상시점>

(‘24.7월말 기준)

NO	공동육아방 → 키즈카페 전환시설	자치구 (행정동)	소관부서 (가족담당관)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일치 여부
			개소 예상시점	개소 예상시점	
1	누리뜰 공동육아방	중구 (장충동)	2025년 상반기	2025.2.	○
2	꿈자람 공동육아방 제기점	동대문구 (제기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1
3	꿈자람 공동육아방 장안1동점	동대문구 (장안1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2
4	면목 공동육아방	중랑구 (면목5동)	2025년 하반기	2025.5.	X 3
5	아이티움 공동육아방	중랑구 (망우본동3호)	2025년 하반기	2025.5.	X 4
6	중화 공동육아방	중랑구 (중화2동)	2025년 하반기	2025.6.	○
7	(*도봉구 내 공동육아방)	(도봉구) 부서간 시설 위치 다름	(창동) 2025년 상반기	(방학1동) 2025.1.	X 5
8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육아방	서대문구 (남가좌1동)	2025년 상반기	2024.11.	X 6
9	홍제 행복열린육아방	서대문구 (홍제3동)	2025년 하반기	대체지 검토 중	X 7
10	방아다리 공동육아방	양천구 (신월5동)	2025년 하반기	2025.7.	○
11	목동깨비 공동육아방	양천구 (목3동)	2025년 하반기	2025.7.	○
12	맘튼튼센터 공동육아방 4호점	영등포구 (당산2동)	2025년 상반기	2025.1.	○
13	동작키즈카페 사당3동점	동작구 (사당3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8
14	동작키즈카페 신대방2동점	동작구 (신대방2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9
15	동작키즈카페 사당1동점	동작구 (사당1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10
16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점	동작구 (상도1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11

22) 가족담당관은 7월말 기준, 아이돌봄담당관은 10월말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17	동작키즈카페 상도2동점	동작구 (상도2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12
18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점	동작구 (상도4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13
19	동작키즈카페 흑석동2호점	동작구 (흑석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14
20	아이랑(난향점)	관악구 (난향동)	2025년 상반기	2025.1.	○
21	아이랑(보라매점)	관악구 (보라매동)	2025년 상반기	2025.1.	○
22	위례 공동육아방	송파구 (위례동)	2025년 하반기	2025.7.	○
23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동육아방	송파구 (송파1동)	2025년 상반기	2024.12.	X 15
24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슈펠라움)	송파구 (오금동)	2025년 상반기	2025.10.	X 16

(*도봉구 내 공동육아방의 경우 두 부서 간 파악 중인 전환시설의 위치 상이)

- 공동육아방이 키즈카페로 시설이 전환되면 해당 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전환 후 개소시점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025년 예산안에서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현재 운영 중인 84개소에 대해 12개월분 전체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음.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방 운영(89개소) = 1,847,358천원 - 기존 인건비(82개소 82명) 2,949,000원*82명*12월*50% = 1,450,908천원 - 키즈카페 전환 확정시설(5개소 5명) 2,949,000원*5명*8월*50% = 58,980천원 - 전환 예정시설(2개소 2명) 2,949,000원*2명*10월*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방 운영(84개소) = 1,832,509천원 - 기존 인건비(84개소 84명) 3,031,930원*84명*12월*50% = 1,528,093천원 - 기존 운영비(84개소) 604,000원*84개소*12개월*50% = 304,416천원 ○ 공동육아방 종사자 처우개선비 = 73,080천원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p style="text-align: right;">= 29,49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운영비(82개소) 590,000원*82개소*12개월*50% = 290,280천원 - 키즈카페 전환 확정시설 운영비(5개소) 590,000원*5개소*8개월*50% = 11,800천원 - 키즈카페 전환 예정시설 운영비(2개소) 590,000원*2개소*10개월*50% = 5,900천원 ○ 공동육아방 종사자 처우개선비 = 75,695천원 - 기존 운영시설(82명) 145,000원*82명*12월*50% = 71,340천원 - 키즈카페 전환 확정시설(5명) 145,000원*5명*8월*50% = 2,900천원 - 키즈카페 전환 예정시설(2명) 145,000원*2명*10월*50% = 1,4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운영시설(84명) 145,000원*84명*12월*50% = 73,080천원

- 향후 부서 간에 공정단계를 공유하고 공동육아방의 키즈카페 전환시 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연내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24년 도 12월말까지 키즈카페로 전환되어 개소가 확정된 시설에 대해서 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운영비 예산을 편성 하는 등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임.
- 또한 키즈카페 조성에 있어 개소시점이 부서 간에 상이한 점은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 추계를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수 있어 부서 간 업무공유 와 세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키즈카페 개소시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줘야 할 것임.

- 지난 ‘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은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가 완료되어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 공간확정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나 집행부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성과지표의 목표/실적 기준을 공급자 위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25년 예산안에서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의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를 여전히 ‘서울형 키즈카페 “선정” 개소수’로 하고 있어, 예산안의 성과지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3	24	25	26			27
서울형 키즈카페 선정 개소수(개소)	핵심	80	목표	40	195	260	400	400	서울형 키즈카페 선정 개소수	실적 통계
			실적	130	200					

7)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사업 (계속) : 사업별설명서 p. 435

① 예산현황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밖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임²³⁾.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사업은 시설 이용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제공하고 서울형 아침돌봄 등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와 구가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6,487만원 증액된 75억 4,293만원이 편성되었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6,263,903	(x-) 6,678,063	(x-) 7,542,928	(x-) 864,865	(x-) 13
사무관리비	(x-) 35,500	(x-) 35,500	(x-) 31,500	(x-) △4,000	(x-) △11
공공운영비	(x-) 356,275	(x-) 356,275	(x-) 385,572	(x-) 29,297	(x-) 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6,300	(x-) 6,300	(x-) 6,300	(x-) 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5,865,828	(x-) 6,279,988	(x-) 7,099,556	(x-) 819,568	(x-) 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 0	(x-) 0	(x-) 20,000	(x-) 20,000	(x-) 100

23) 규모별로 210㎡미만은 일반형 키움센터, 1,000㎡미만 시설은 융합형 키움센터로 구분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음.

- 특히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운영비 2.4% 인상률을 반영하고 급·간식비 1식 단가가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1,957만원 증액되었음.

② 주요쟁점 : 신규 설치 개소일정을 고려한 세밀한 예산 추계 필요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말 기준 운영 중인 키움센터는 일반형 225개소, 융합형 27개소가 운영 중이며, '24년 연말까지 일반형 10개소, 융합형 3개소, '25년도에 일반형 4개소, 융합형 3개소가 추가로 설치 완료되어 운영될 예정임.
-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센터에서 대해서는 세밀한 공정관리를 바탕으로 개소 예상시점을 파악하여 운영비 등에 대한 과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필요함.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24.10월말 기준, 단위:개소)

구분	소계	일반형	융합형	비고
총계	272	239	33	
운영 중	252	225	27	
설치 중	13	10 (중구, 동대문, 성북, 양천, 강서 2개소, 구로, 동작 3개소)	3 (성북, 노원, 송파)	(‘24.12월말 개소예정)
	7	4 (노원, 강동, 양천, 구로)	3 (도봉, 강동, 송파)	(‘25. 연중 개소예정)

-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등(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센터를 모두 포함하여 일반형 239개소, 융합형 33개소에 대해 12개월분 전체에 대한 운영비, 급·간식비 예산을 편성하였음.

<’25년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예산안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구분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일반형 운영비 - 255,000원*12개월*239개소 = 7억 3,134만원
	○ 일반형 급·간식비 (방학 중식 / 아동수 평균25명, 일식당 9,000원) - 2,250,000원*4개월*239개소 = 21억 5,100만원
	○ 융합형 운영비 - 832,000원*12개월*33개소 = 3억 2,947만원
	○ 융합형 급식비 (방학 중·석식, 학기 석식 / 아동수 평균35명, 일식당 9,000원) - (7,560,000원*4개월*33개소)+(3,780,000원*8개월*33개소) = 19억 9,548만원
	○ 월임차료 지원 - 2,151,000원*12개월*67개소 = 17억 2,940만원
	○ 집중지원구 지원 - 1,875,000원*12개월*5개구 = 1억 1,250만원
	○ 서울형 아침돌봄 운영비 - 250,000원*10개월*20개소 = 5,000만원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5년 신규로 개소 예정인 '일반형 4개소'와 '융합형 3개소' 중 '일반형 2개소'와 '융합형 3개소는' '25년 하반기에 개소예정으로 운영비, 급·간식비가 일부(6개월) 또는 전체(12개월)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음.

<’25년 신규 개소예정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현황’>

연번	자치구	행정동	유형	면적(m ²)	정원(명)	개소예정	지연현황	공정단계
1	노원	중계본동	일반형	66	20	25.01.	-	공사중(80%완료)

연번	자치구	행정동	유형	면적(㎡)	정원(명)	개소예정	지연현황	공정단계
2	강동	상일1동	일반형	120	25	25.01.	-	SOC시설 통합설계 완료
3	양천	신정7동	일반형	185	32	25.07.	-	설계용역 중
4	구로	개봉1동	일반형	80	20	25.12.	소송 후 건물철거	-
5	도봉	도봉2동	융합형	213.34	30	25.06.	신축건물 준공지연	공공건축 심의 추진 중
6	강동	둔촌1동	융합형	339.16	40	25.06.	기부채납시설 준공지연	-
7	송파	방이2동	융합형	352.93	70	25.12.	문화재발굴 공사지연	설계용역 준비 중

- 신규로 센터를 설치할 경우, 특히 신축건물 내 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 건물 준공 문제 등으로 설치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시립으로 운영할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의 경우 ‘24.4월부터 5년간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23년 9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기부채납시설 준공지연 문제로 아직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²⁴⁾.
- 市에서 관리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달리 ‘일반·융합형’ 키움센터의 경우 자치구와 협력해야 하는 만큼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집행부서는 ‘24년도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센터(13개소)와 ’25년도 신규 설치 예정인 센터(7개소)에 대해 자치구와 세부 공정별 밀착관리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임.

24)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5.3월 개소예정

- 신규로 설치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25년도 개소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비를 12개월분 전체로 편성하는 경우가 우리동네키움센터 국비보조 세부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 결과²⁵⁾를 반영하여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하여 일반형 239개소, 융합형 33개소 전체에 대해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사업설명서 p.459)에서 운영비 12개월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사업설명서 p.463)에서 인건비 12개월분을 반영하였음.

〈우리동네키움센터 국비보조 세부사업 중 과대추계된 예산 편성내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과목	2025년 예산(안)	과목	2025년 예산(안)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 일반형 운영비 = 1,864,200천원 - 기준(239개소) 650,000원*12개월*239개소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 일반형 인건비 = 28,313,184천원 - 기준(239개소) 3명*4,029,000원*12개월*239개소-구비분담분(6,352,332,000원)
	○ 융합형 운영비 = 257,400천원 - 기준(33개소) 650,000원*12개월*33개소		○ 융합형 인건비 = 7,095,576천원 - 기준(33개소) 5명*4,029,000원*12개월*33개소-구비분담분(881,844,000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²⁶⁾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25)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 아이돌봄담당관-3263, 24.9.13.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재원분담금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함.

- 따라서 집행부서는 사전에 개소 예상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맞게 연내 집행가능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추계하고,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 전에 알맞은 보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예산이 이미 편성된 현재 시점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²⁷⁾에 따라 12월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해당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③ 주요쟁점 : 「보조금법」 법령을 준수한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필요

- 일반형·융합형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법정시설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일반형·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시 설치비를 국비:시비:구비=30:35:35로 분담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이에 신규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키움센터 설치계획 수요조사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음.

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25년도에도 예산 편성 전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키움센터 신규 설치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5개소의 신규 설치가 자치구로부터 접수되어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음.²⁸⁾
- 이에 키움센터 신규 설치비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총 6개소'²⁹⁾에 대한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국비보조금이 사전통보³⁰⁾되었지만, 집행부서의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 자본보조	○ 일반형 설치비 = 694,344천원	○ 융합형 설치비 = 298,541천원
	- 리모델링비 (132㎡*1,173,000원*4개소)-65,000,000원(구비분담분) = 554,344천원	- 리모델링비(융합형) (217㎡*1,173,000원*1개소)-(30,000,000원*1개소)(구비분담분) = 224,541천원
	- 기자재비 20,000,000원*4개소 = 80,000천원	- 기자재비 50,000,000원*1개소 = 50,000천원
	- 설계비 12,000,000원*4개소 = 48,000천원	- 설계비 24,000,000원*1개소 = 24,000천원
	- 현판제작 3,000,000원*4개소 = 12,000천원	
	○ 융합형 설치비 = 351,326천원	
- 리모델링비(융합형) (262㎡*1,173,000원*1개소)-30,000,000원(구비분담분) = 277,326천원		
- 기자재비 50,000,000원*1개소 = 50,000천원		
- 설계비 24,000,000원*1개소 = 24,000천원		
	증감사유	
	○ 일반형 신규 미설치	

28) '25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및 수요 제출, 아이돌봄담당관-8195, 24.6.27.

29) 일반융합형 4개소, SOC 2개소

30)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 아이돌봄담당관-3263, 24.9.13.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 융합형 신규 설치(1개소) 면적 감소에 따른 감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³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국비보조사업은 재원분담에 따라 서울시 재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며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법령에서 국비보조사업의 지방재원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에서는 신규 설치 개소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시설에 대해 12개월분 전체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매칭하고, 설치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25년도에 키움센터의 신규 설치가 1개소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통보(가내시) 전 또는 확정내시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도의 설치수요를 조정하여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의무부담 법령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가. 여성가족실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여성가족실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가족기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 2025년도 양성평등가족 기금 조성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1억 7,677만원이고,
 -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억 1,254만원, 지출 11억 3,000만원,
 -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1억 1,580만원임.

<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㉑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㉒ = ^㉑ + ^㉔
	수입 ^㉓	지출 ^㉔	증감 ^㉕ = ^㉓ - ^㉔	
24,176,770	1,111,254	1,130,000	△18,746	24,158,024

-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의 주요 원천은 이자수입(47.0%), 예치금회수(46.8%), 일반회계 전입금(4.8%), 기타수입(1.4%)으로 구성되고,
 - 수입 총액은 2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25만원이 증액(1.5%)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보조금 반환 기타수입(11.3%)이며 공모사업 집행 부진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과 전년도 기금 규모

총액 증가하여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했기 때문임.

< 2025년도 양성평등 가족 기금 수입 계획 >

(단위: 천원, %)

항 목	2024년 수입액	2025년 수입액			2025년 수입액 대비율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계	2,056,770	2,088,024	31,254	1.5	100.0
예치금회수 (이월금)	893,547	976,770	83,223	9.3	46.8
이자수입	1,035,768	980,995	△54,773	△5.3	47.0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100,000	0	0.0	4.8
기타수입	27,455	30,259	2,804	11.3	1.4

- 지출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주로 '고유목적사업비'(53.5%)와 '예치금'(45.9%)에 집행할 계획임.

< 2025년도 양성평등 가족 기금 지출 계획 >

(단위: 천원, %)

항 목	2024년 지출액	2025년 지출액			2025년 지출액 대비율
		지출액	증감	증감율	
합계	2,056,770	2,088,024	31,254	1.5	100.0
고유목적사업비	1,067,000	1,117,000	50,000	4.7	53.5
기본경비	13,000	13,000	0	0.0	0.6
예치금	976,770	958,024	△18,746	1.9	45.9

- 2025년 고유목적사업비 11억 1,700만원의 구체적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① '공모사업 추진' 사업으로 편성된 6억 7,700만원은

공모사업추진(20개 내외 단체,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고, 5,000만원은 공모사업 컨설팅 등의 용도로 편성됨. 또한 ②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으로 6,000만원과 ③ 2023년부터 편성된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1억원 ④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신규사업 ⑤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심지킴이 운영’ 신규사업에 각각 5,000만원 편성됨. ⑥ ‘양육행복도시 성과평가’ 연구 1억원 ⑦ ‘아이사랑홈 인증사업’ 8,000만원 ⑧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홍보’사업은 종료하여 별도 편성하지 않음.

< 고유목적사업비 예산 명세 >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2023년 예산액	2024 예산액(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100/A
						(x-)
계		(x-) 1,120,232	(x-) 1,067,000	(x-) 1,117,000	(x-) 50,000	(x-) 4.7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	사무관리비	(x-) 50,000	(x-) 50,000	(x-) 50,000	(x-) 0	(x-) 0
	민간경상 사업보조	(x-) 800,000	(x-) 483,122	(x-) 620,000	(x-) 136,878	(x-) 28.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x-) 0	(x-) 7,000	(x-) 7,000	(x-) 0	(x-) 0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10,000	(x-) 0	(x-) 0
	행사운영비	(x-) 50,000	(x-) 50,000	(x-) 50,000	(x-) 0	(x-) 0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x-) 100,000	(x-) 100,000	(x-) 100,000	(x-) 0	(x-) 0

사업명	구분	2023년 예산액	2024 예산액(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100/A
						(x-)
계		(x-) 1,120,232	(x-) 1,067,000	(x-) 1,117,000	(x-) 50,000	(x-) 4.7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x-) 0	(x-) 50,000	(x-) 50,000	(x-) 0	(x-) 0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심 지킴이 운영	사무관리비	(x-) 0	(x-) 0	(x-) 5,700	(x-) 5,700	(x-) 0
	민간경상사업 보조	(x-) 0	(x-) 0	(x-) 44,300	(x-) 44,300	(x-) 0
양육행복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x-) 0	(x-) 109,878	(x-) 100,000	(x-) △9,878	(x-) △9.0
아이사랑홈 인증 사업	사무관리비	(x-) 0	(x-) 30,000	(x-) 0	(x-) △30,000	(x-) △100
	자치단체경상 보조	(x-) 0	(x-) 50,000	(x-) 80,000	(x-) 30,000	(x-) 60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x-) 106,632	(x-) 0	(x-) 0	(x-) 0	(x-) 0
	사무관리비	(x-) 3,600	(x-) 0	(x-) 0	(x-) 0	(x-) 0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민간경상사업 보조	(x-) 0	(x-) 50,000	(x-) 0	(x-) △50,000	(x-) △100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	사무관리비	(x-) 0	(x-) 44,000	(x-) 0	(x-) △44,000	(x-) △100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x-) 0	(x-) 33,000	(x-) 0	(x-) △33,000	(x-) △100

나. 양성평등가족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 :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해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연도별 양성평등가족 기금 공모사업 운영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총액	지원액	공모 단체 수	지원(선정) 단체 수	최저 지원액	최고 지원액	1단체당 평균 지원금액
2020	1,170,219	976,951	87	50	5,772	30,000	19,539
2021	1,000,000	999,284	88	50	6,400	25,000	19,986
2022	800,000	793,684	86	35	10,390	27,300	22,677
2023	800,000	770,033	54	30	9,000	30,000	25,668
2024	483,122	476,646	58	24	11,429	22,410	19,860

주: 지원액은 실제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집행액이며, 예산총액은 양성평등가족 기금 총 예산 중 「공모사업 추진(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함

- 동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을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장기적으로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024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자체평가 70점으로(보통) 사업 자체는 타당하나 대상 단체가 한정적이고, 동일기관에 지속 지원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또한 ‘공모사업’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비율이 증가

되어 '기타수입'의 비중이 전년대비 11.1%(280만원) 증가된 점을 비추어 볼 때 고유목적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요구됨.

※ 최근5년간 공모사업 불용률은 2~3% 수준임.

- 또한 기금의 경우 본 예산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출 운용변경계획이 가능하므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가능한 연구, 교육 사업 등을 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기금 목적에 따른 적정한 편성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사업의 경우 수행주체가 서울여성가족재단이며, 출연금과 별도로 양성평등가족기금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경찰·교사 등에게 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지원을 위한 기금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를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함.
 - 연도별 기금수입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 지급 방법 등」에 의거, 예치금은 2023년~2026년까지는 고정금리 2.02%, 예탁금은 변동금리로 4.19%(3분기 기준) 운용되고 있음,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3% 감액(5,400만원) 되었으나 기금 사업을 위한 예치금 회수는 전년대비 9.3%(8,300만원)가 증가됨.
 - 과거 기금 수입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억원, 2017~2020년 및 2022년까지 6억원이 꾸준하게 전입되어 오다 2023년부터 1억원으로 전입금을 줄여 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받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기금재원조달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됨.
-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미진하게 사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은행금고와 재정투융자 기금에 과도하게 예치·예탁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요구되는 바임.

<연도별 기금 수입액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전입금(출연금)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015	829,429	0	0	224,410	605,019
2016	1,049,449	300,000	0	194,534	554,915
2017	1,182,540	600,000	0	173,668	408,872
2018	1,271,520	600,000	100,000	234,687	336,833
2019	1,493,666	600,000	0	506,075	387,591
2020	1,637,885	600,000	0	640,516	397,369
2021	1,594,144	0	600,000	541,103	453,041
2022	1,301,723	600,000	0	339,144	362,579
2023	1,473,476	100,000	0	376,778	996,698
2024	2,056,770	100,000	0	893,547	1,063,223
2025	2,088,024	100,000	0	976,770	1,011,254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여성가족실의 주요 세입구조는 ‘국고보조금 등’에 의한 ‘법정지원사업’으로 최근 3년간 부모급여 수당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계속된 저출생 현상에 따른 영유아 및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아동수당, 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입 규모가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음. 또한 지방교부금 미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감소 및 민간 교부 보조금 반환수입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감소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전년대비 세출예산은 2.6% 감액하였으나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관련 신규사업,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지원, 보육교사 및 보육료 지원, 키즈카페·키움센터 운영,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 영유아 보육·아동 돌봄·가족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과 예산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상당수 감액된 반면, 여성가족실 자체 예산사업은 소폭 증가함.
- 셋째, 사업별 검토의견으로는 출산·양육 가정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사업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키움센터, 키즈카페 등 신규설치 개소시점을 고려한 예산편성 등 필요하다 하겠음.
- 넷째,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양성평등가족기금의 목적 적합성 문제와 운용재원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임.